

■ 화제의 뉴스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받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등 사업자단체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이들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정위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에게 개정 표준공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 [건설경제신문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2015. 7. 1.\)](#)